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1-75호**

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

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(환경부고시 제2017-107호, 2017.6.2)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12일

환경부장관

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6호” 를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6호” 로, “별표 10의 ‘사고대비물질(영문명 및 CAS 번호)’ 란” 을 “별표 3의2 제1호의 ‘사고대비물질[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(CAS No.)]’ 란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